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4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 안규백·양정숙·장철민

전혜숙 • 이해식 • 윤미향

황운하 • 양경숙 • 박성준

김남국 • 이형석 • 유동수

김경만 • 아수진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,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,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·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,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고자 함(안 제115조). 법률 제 호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5조 중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(벌칙) 제113조를 위반하	제115조(벌칙)
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	
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	<u>3천만원</u>
의 벌금에 처한다.	